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10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 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 세무 및 법률정보

-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분석요약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출처: 금융감독원, 2020. 9. 28]

[분석요약]

◆ (분석 결과)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0.6%p ↑) 하였습니다.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이,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표명됨

◦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

◆ (시사점)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한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개요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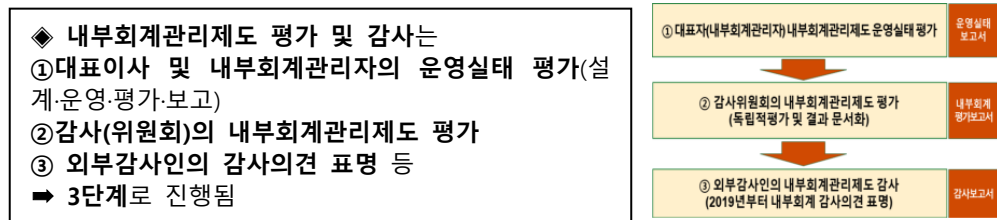
□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新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

\* 2 조원 이상('19년), 2 조원~5 천억원('20년), 5 천억원~1 천억원('22년), 1 천억원 미만('23년)

- (분석대상)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 후 내부회계 감사가 첫 시행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160사)을 대상으로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및 중요 취약점 유형을 분석하고
  -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점검하여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분석결과

II. 분석결과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의견현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97.5%임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을,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음
  -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는 전기(검토의견)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음

◆ 중요한 취약점(MW : Material Weakness)

※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하여 의견을 표명

-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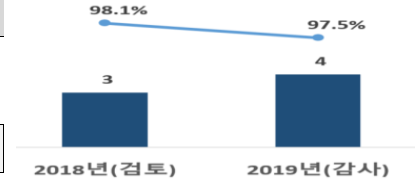
- (의견추세)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부회계 감사 결과 적정의견 비율(97.5%)은 전기 검토 결과 적정의견 비율(98.1%)과 유사한 수준

\*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중 : '18년 98.1%(검토의견), '19년 97.5%(감사의견)

- 이는 2 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것에 기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현황**

구 분	2018년(검토)	2019년(감사)
적정(취약점 X) (비율)	157 (98.1)	156 (97.5)
<b>비적정(취약점 O)</b>	<b>3</b>	<b>4</b>
합 계	16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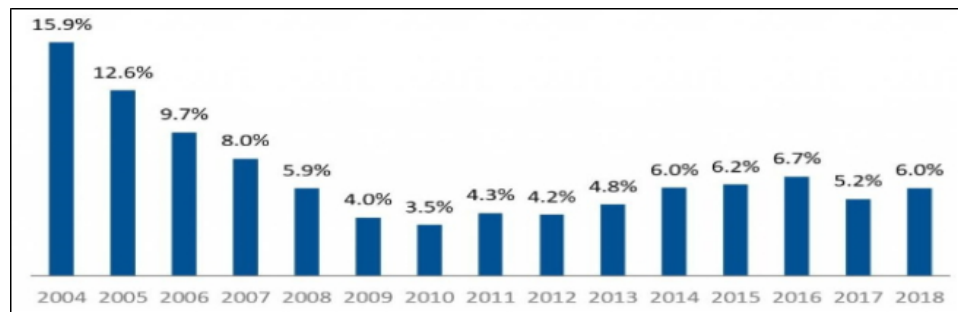


□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04회계연도)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

◦ 다만, 우리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

-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美상장법인 내부회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 추세**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평가현황)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9사는 중요한 취약점 없이 내부회계가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에 대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표명한 회사(4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에서 1사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총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이는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

**비적정의견 사유 : 중요한 취약점**

구분	유형	세부내역
중요한 취약점	손상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관련 -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관련
	리스	- 리스 회계처리 관련
	기타	-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사항 인식 관련 -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토 관련 - 소송총당부채의 측정 관련 - 항공기 정비비용(유형자산, 미지급비용) 인식 관련

□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한 반면,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업무분장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에 기인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8회계연도 기준)**

비적정의견 사유(중요한 취약점)	회사 수	비중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프로세스 통제 취약	180사	36.8%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288사	58.8%
내부감사 미비	10사	2.0%
경영진의 전문성 등 취약	5사	1.0%
기타	7사	1.4%
<b>합 계</b>	<b>490사</b>	<b>100.0%</b>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를 포함한 160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 동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기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시사점 및  
유의사항

III. 시사점 및 유의사항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 '19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대부분'은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와 동일한 취지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공시

\* 외부감사인인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4사 중 1사만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이 비적정( 나머지 3사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은 적정)

- 한편,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대형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평가를 지원하는 회사는 37.1%로 낮은 수준

\* 설문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5사 중 39사(37.1%)가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업무 수행 시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내부회계에 대한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내부회계 주요 취약점은 재무제표 오류 또는 결산통제에 편중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18회계연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내부회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

-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할 필요
  -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어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
    - \* 회사의 현내부회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정보이용자는 중요한 취약점의 의미와 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
    -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감독당국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다소 낮은 수준
  - \*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인 '04회계연도에 ICFR에 대한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은 6.0% 수준
  -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
  - 반면,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경영진 대상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정보공유 확대 등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 '20.10.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blueprint를 승인하고, '20.10.12일 이를 공개 하였습니다.

\* Inclusive Framework(IF):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現 137개국)

□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 필라1·2 blueprint는 금년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입니다.

**1. 필라1 blueprint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 논의

□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1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Amount A ②Amount B ③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 구체화

○ (Amount A)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정부분(시장 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Amount B)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고정율\*로 과세권 배분

\* 現 이전가격 과세체계(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계산 표준화 → 집행·협력비용 절감 및 조세확실성 제고

○ (조세확실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개발

□ (적용대상) ①업종 기준과 ②규모 기준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

① (업종 기준) ①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및 ②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을 구체적으로 정의

▪(디지털서비스사업)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되, 보충적으로 일반적 정의(자동화된 디지털기반 서비스)를 규정

▪(소비자대상사업)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서비스 공급



-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적용 제외
  - 직접 및 간접판매(대리인·중개인 등 제3자, 프랜차이즈·라이선스 등을 통한 판매) 포함
  -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제외
-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 단계적 도입(디지털서비스사업만 우선 적용)·세이프 하버(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
- ② (규모 기준)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
  - ①글로벌 매출액 ②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 적용
-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
  - \* OECD 사무국은 연 7.5억 유로(약 1조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 제시
- (과세연계점\*) 디지털서비스사업(최소매출 기준만 적용)과 소비자대상사업(최소매출 기준 상향+추가 기준 적용) 차별화 명시
  - \*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 → 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 판단
  -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 마련
  - ☞ (추후 논의사항) 최소매출 기준금액, 최소매출 지속기간 필요성,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추가 기준\*, 개도국 고려방안 등
    - \* 시장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시장참여 간주), 맞춤형·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 다수 방안 논의 중
- (매출귀속 기준\*) 세부 업종별 복수 지표를 순위에 따라 적용
  - \* 과세연계점 판단의 전제로 글로벌매출이 귀속될 시장소재국(원천지국) 판단 기준
  -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지표와 그 적용 순위, 지표 신뢰성·확보가능성 낮은 경우에 관한 지침 등
- (과세표준 산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 업종별(디지털서비스사업·소비자대상사업·제외업종)로 구분 산출하되,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 마련
  - 국내 손실공제와 별개로 Amount A 차원에서 손실 이월공제\*
    - \* 당해연도에 배분하지 않고 이월하여 후속연도에 이익발생시 공제(earn-out mechanism)

- ☞ (추후 논의사항) 구분(segmentation) 면제·완화 방안 구체화\*, 이익부족분(profit shortfall)\*\* 손실간주 여부 등
  - \* 소규모기업 구분 면제, 구분 필요성 검증, 공시 재무제표 활용, 업종간 이익률 차이가 기준 이하인 경우 기업 선택 허용 등 논의 중
  - \*\* 이익이 기준 이익률에 미달하는 부분
- (과세이익 배분) ①이익율 기준 ②배분율 ③배분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장소재국별 배분소득 결정
  - ① A기업 매출×(A기업 조정 후 세전이익율-이익율 기준)= A기업 초과이익
  - ② A기업 초과이익×배분율=전체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시장 기여분)
  - ③ 배분대상 과세소득× 배분지표=개별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차별화 논의,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시장소재국 배분소득 이중계산 방지 논의 등 반영
-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이익률 기준·배분율·배분지표, 차별화\* 및 이중계산 방지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 등
  - \* 업종별 차별화(디지털서비스사업에 낮은 통상이익율 또는 높은 배분율 적용), 원격매출 차별화(원격매출에 낮은 통상이익율 적용) 등 논의 중
  - \*\*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배분소득을 비교하여 부족분만 추가 배분하는 방안(판매·홍보이익 세이프하버) 도입 논의 중
- (중복과세 제거) 단계적 기준에 따라 Amount A 부담법인을 식별하고, 그 법인 소재국에서 소득·세금 공제\*를 통해 중복과세 제거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Amount A 부담법인 소재국이 선택 가능
- ☞ (추후 논의사항) Amount A 부담법인 식별기준 구체화\*, 중복과세 제거 방법의 국내법 등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적용 등
  - \* OECD 사무국은 ①사업활동 ②이익율 ③시장관련성 ④비례적 배분의 4단계 기준 제시
- (Amount B) 적용범위\*, 고정율 도출방법\*\* 등 논의 진전
  - \* 다국적기업의 국외관계사에 의한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제한
  - \*\* 지역·산업별 구분에 따라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도출
- ☞ (추후 논의사항) 적용범위 확정, 지역·산업별 구분 및 고정율 구체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 운영 여부 등
-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 분쟁 예방·해결 절차 골격\* 및 Amount B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개선\*\* 논의

2020년 10월호

\* 신고 표준화·일원화(대표 과세당국 신고 및 정보교환), 사전 확정절차(기업의 신청, 대표 과세당국 예비심사, 1·2차 패널의 검토 및 결정) 등

\*\* 강제력·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 (추후 논의사항) 패널 구성, 구속력 확보 방안 등

## 2. 필라2 blueprint 주요내용

미해결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2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세원잠식방지 규칙 ②원천지국과세 규칙 ③규칙 간 조정(적용순위 등)으로 구분

○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다시 ①소득산입 규칙(세액공제전환 규칙) 및 ②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구분하고, 그 특별 규칙도 설명

○ 각 핵심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도 구체화

□ (핵심쟁점 명시)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서 정치적 합의 필요

□ (적용범위)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

○ (제외기업) 투자펀드·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

○ (규모기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매출 7.5억유로 미만(약 1조원)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 제외

☞ (추후 논의사항)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 규모기준 미충족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 등

□ (실효세율 계산) 해당국가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상대방국가에서 과세

▪ 실효세율 = 대상세액 ÷ 과세소득(과세표준, 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 추가세액 = 과세소득 × 추가세율(최저한세율 - 실효세율)

○ (손실 이월공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세액에서 공제(IIR tax credit)

☞ (추후 논의사항) 실효세율 계산 범위(blending)\*,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방안\*\* 추가논의, 최저한세율 구체화 등

\* OECD 사무국은 국가별 구분 계산(jurisdictional blending) 제안

\*\* ①국가별 보고서 활용 ②최소이익 규정(de minimis exclusion) ③특정연도 실효세율을 수년간 사용 ④BEPS 위험이 낮은 국가 적용 제외(white list) 등 방안 논의 중

2020년 10월호

- (적용 예외)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formulaic substance-based carve-out) 제안
  - 해당국가 내 실질 사업활동\*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실질 사업활동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방지
    - \*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 기준으로 급여(인건비)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제안
  - ☞ (추후 논의사항) 고정율 구체화, 적용 예외 인정방식 및 정량기준 보완 등 추가논의 필요
- (소득산입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 추가세액 부담
  - \* 저세율국가 소재 국외관계사 추가세액을 합산하여 모회사에서 부담
  - ※ (세액공제전환 규칙) 저세율국가에 국외관계사가 아닌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이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 적용 불가
    - 소득면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세액 부담
  - (최종모회사 우선) 다국적기업집단의 최종모회사에 우선 적용 → 적용이 어려우면 아래 중간모회사에 적용(top-down approach)
    - ☞ (추후 논의사항) 지분 분할소유시 적용 방안\* 등
    - \* 최종모회사가 중간모회사 지분을 제3자와 분할소유하는 경우 → OECD 사무국은 최종모회사가 아닌 중간모회사가 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 제안
- (비용공제부인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 부담
  - (소득산입 규칙 우선적용)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의 보완적 규정(backstop)
    -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를 직·간접 지배하는 국외 관계사에 소득산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 (추후 논의사항) 기술적 사항(동 규칙이 다수의 구성회사에 적용되는 경우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배분한도 등) 중심 논의 필요
- (원천지국과세 규칙) 소득의 저세율국 이전을 통한 원천지국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규칙
  -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 원천지국에 최저한세율까지 추가세액 과세권 인정
    - 저세율국 여부는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로 판단
  - ☞ (추후 논의사항) 거래·기업규모 기준 도입 여부 및 금액, 관계사간 거래 제한 여부\*, 지급금의 범위 등 추가논의 필요

- \* OECD 사무국은 관계사간 지급금에만 적용 제안
- \*\* OECD 사무국은 이자, 사용료, 고위험 서비스대금(무형자산 사용료·보험료 등) 등에 제한 제안
- (규칙 적용순위) 규칙의 중복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OECD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 제안
  - (원천지국과세 규칙-다른 필라2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우선 적용 → 동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을 계산시 반영
  - (다른 필라2 규칙-기존 규칙) 기존 규칙(CFC·원천징수세액) 우선 적용 → 기존 규칙에 따른 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반영
  - (소득산입 규칙-비용공제부인 규칙) 소득산입 규칙 우선 적용
  - (소득산입 규칙 간) 최종모회사 우선 적용(top-down approach)
  - (세액공제전환 규칙) 소득산입 규칙에 보완적으로 적용(→ 다른 규칙과의 순위는 소득산입 규칙과 동일)
- ☞ (추후 논의사항)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은 추가논의 필요

### 3. 향후 일정

- 필라1·2 blueprint는 '20.10.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임
- OECD/G20 IF는 이번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최종방안 합의시점을 당초 '20년 말에서 '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였으며,
  - blueprint에 기초하여 '2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하여 '21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최신 세무예규  
판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2020.10.05)

(사실관계)

○ 신청인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화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추후 무주, 금산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 태양광발전시설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인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며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서울시 강서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역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및 사업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신】**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해외본점에 자료를 요청하여 한국지점이 해외본점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이를 해외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조심2019전0260, 2020.09.25)

**【판단】**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의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은 청구법인 등의 국내정유사와 국내·외의 선사간 선박용 연료유 거래에 있어서 ○○○등 글로벌 벙커트레이드업체를 통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정유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바가 없는 점,

다른 정유사와 동일하게 글로벌 벙커트레이드업체인 ○○○중개를 통하여 국내·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을 하는 청구법인으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계약서에 같음한다는 것) 상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업 무 소 개

<h2 style="margin: 0;">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